



목포시

#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8일 01시 02분



**소독횟수 기준(제36조제4항 관련)**

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	소독횟수	
	4월부터 9월까지	10월부터 3월까지
1.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소(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소	1회 이상/1개월	1회 이상/2개월
2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21조제8호(마목은 제외한다)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 (이하 “식품접객업소”라 한다)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		
3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시내버스·농어촌버스·마을버스·시외버스·전세버스·장의자동차, 「항공법」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, 「해운법」에 따른 여객선, 「항만법」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, 「철도사업법」 및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(☒☒) 및 역무시설		
4.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,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		
5. 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		
6. 「식품위생법」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(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	1회 이상 / 2개월	1회 이상 / 3개월
6의2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		
7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		
7의2.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(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		
8. 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장(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		
9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		
10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		
11.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		
12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(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)	1회 이상 / 3개월	1회 이상/6개월
13. 「주택법」에 따른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		

**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3조 관련)**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
		1회	2회
1.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83조 제1항제1호	50만원	100만원
2.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83조 제1항제2호	50만원	100만원
3.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·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83조 제1항제3호	25만원	50만원
4.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·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	법 제83조 제1항제4호	15만원	30만원



COPYRIGHT © MOKPO-SI. ALL RIGHT RESERVED.

***MokPo - Si***  
***Web Contents***

